

[별지 제59호의14서식의(가)] 삭제 <2015.8.13.>

재외선거안내문 (표준서식)

□ 투표장소 및 투표기간

각 재외투표소의 소재지 및 운영기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([www.nec.go.kr](http://www.nec.go.kr))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([www.mofa.go.kr](http://www.mofa.go.kr))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, 투표시간은 각 공관별 투표소 운영기간 중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.

□ 재외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것(미지참시 투표할 수 없음)

여권, 주민등록증, 공무원증,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명서

※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가지고 가야 하며, 그 서류의 원본에 사진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진이 첨부된 다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.

□ 투표방법

① 재외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서명 또는 무인하고,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.

※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하며, 그 서류의 원본에 사진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진이 첨부된 다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.

②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(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)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 기표소를 나옵니다.

③ 회송용 봉투를 풀 또는 양면테이프로 봉합합니다(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).

④ 봉합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됩니다.

□ 다음의 경우는 무효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또는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
-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봉합하지 아니한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된 것
-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
-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
- ⓪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
- ⓪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
-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